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건설업

2024. 1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건설업

2024. 1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건설업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건설업)」 이용 안내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대한 건설분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북은 건설 분야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현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기재포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가이드북의 내용 중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 및 법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목차 Contents

Part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6
---------------	-----------------------	----------

Part 2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방법	12
---------------	------------------------------	-----------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14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14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18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19
5. 조정요건	20
6. 조정주기	20
7. 조정일	21
8. 조정대금 반영일	21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21
9.1. 반영비율	22'
10. 기타 사항	23



Part 3 **건설분야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 작성 예시**

24

Part 4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38

-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40
- 2. 협의 개요 40
- 3. 미연동 사유 40

Part 5 **기타 법률과의 비교**

42

- 1.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4
- 2.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5
 - 2.1. 하도급법 제16조: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련 46
- 3. 기타 법률상 의무 등 48



PART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PART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주요 원재료)** 목적물 등의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입니다.

*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연동제 자율 적용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원·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연동제 적용 대상 원재료를 정할 수 있음

2. 건설분야 주요 하도급거래: 건설위탁, 제조위탁 등

■ 건설분야 하도급거래는 ①**건설업자(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건설 관련 업무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건설위탁)***하거나 ②**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이를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로 분류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

건설 tip **건설위탁**

- ❖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업자 범위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②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건설 tip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 **(제조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감문, 엘리베이터 등)
- ②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③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요건**1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기업의 기준**

□ 건설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하도급거래 기간은 통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거래기간 판단방법

- 계약기간보다 실제 시공기간이 짧더라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시공을 준비하는 동안 해당 계약으로 인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계약기간을 고려할 필요
- 통상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등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하나, 서면을 늦게 발급하여 계약기간보다 실제 시공기간이 길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공기간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시공기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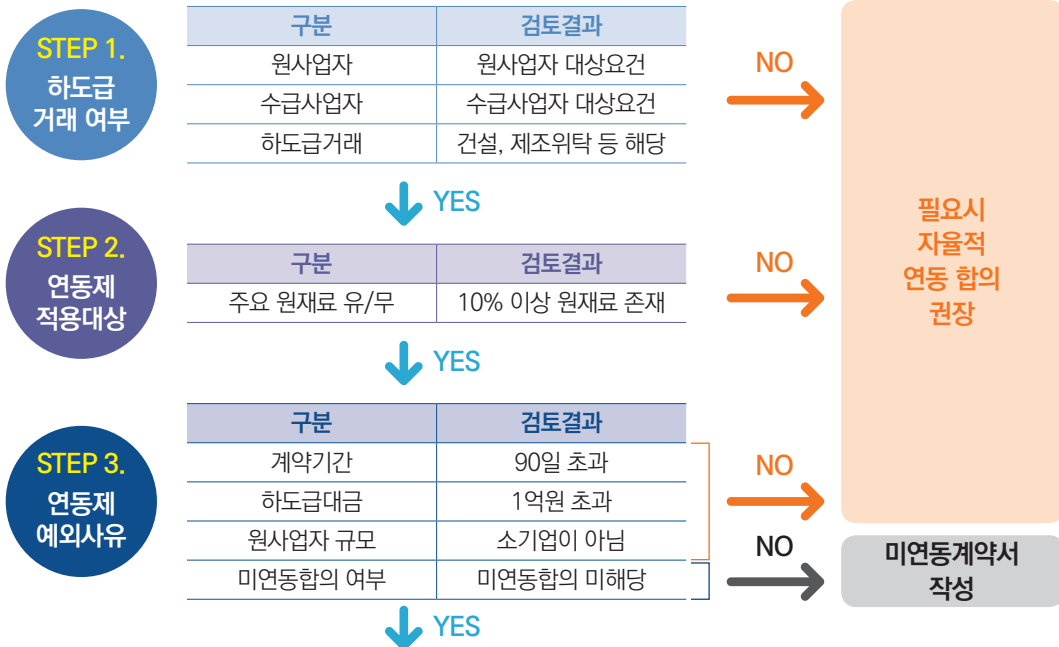
3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등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의미(부가가치세 포함)합니다.

4 원·수급사업자가 미연동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미연동하기로 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Part 4. 표준미연동계약서 작성방법)

4. 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조정 관련 서류 보존

5. 성실한 협의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연동계약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실질적 의견 교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조건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후 협의하는 경우

권설 tip 입찰·낙찰단계에서 협의

- ❖ ‘입찰-낙찰-계약체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설위탁의 경우, 낙찰단계에서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
 -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응찰자의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PART

2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방법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PART
2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방법

※ 주의: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목적물 등’은 공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건설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의미하며 하도급공사명과도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00공장 라인 재배치 및 철거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1. 주요 원재료의 정의

- 원재료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재료의 예시

- ① 천연재료
 -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② 화합물
 - 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레스관 등
-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등

- 주요 원재료란 물품등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2.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시공에 사용할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동 대상입니다.
 - 다만, 주요 원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연동제를 적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미연동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라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 tip 원재료의 범위

-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재료비에 운반비를 포함시켜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예시) 타일 등 건축자재 구매 시 재료비를 지급하면 타일을 생산하는 회사가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재료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존재

▶ 재료비에 운반비를 포함시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참고 사급자재의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 판단방법

- 사급자재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에 다양한 거래양태가 존재하므로 사안별로 연동 대상 원재료를 판단할 필요
- 원사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원사업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하나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동제의 도입취지가 원재료 가격 변동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 고려

- 다양한 원재료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도 원·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설 tip 연동제 자율 적용

❖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연동계약 체결하는 것을 권장

(예시) 아파트 공사 시 레미콘 재료비 비중이 하도급대금의 4%임에도 자율적으로 연동계약 체결 → 벌점 감경, 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참고 연동제 도입 관련 인센티브 내용

1. 공정위

- ① 벌점 감경(최대 3.5점):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 하도급계약 중 연동계약(가격변동분의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 비율 50% 이상(1점)+대금증액비율 10% 이상(1.5점)+원재료 가격 상승시에만 연동 등 추가 감경사유(1점)
- ② 협약 이행평가 가점(최대 5점): 연동계약 체결 및 확산(25년 평가 변경)
 - 연동계약체결여부(1점)+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비율(1점)+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여부(1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2점)
- ③ 과태료 감경(최대 50%):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④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

2. 중기부

- ① 벌점 감경(최대 2점):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1점),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2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2점)
 - * 단,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
- ② 동반성장지수평가
 - 민간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연동제 운영 실적, 조정협의회도 운영 실적에 따라 최대 4점
 - 공공기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관련 내부 규정 반영(1점), 연동계약 체결기업 수(2점) 최대 2점
- ③ 과태료 감경(최대 50%)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1 공통된 성격이 있는 원재료의 경우

- 당사자간 **협약**에 **품명·규격·모양·재질** 등을 고려하여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원자재가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 tip 원재료 판단 방법

❖ 철판 3mm, 2mm가 사용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 협의 하에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음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철판 3mm	5%	X	철판	12%	O
철판 2mm	7%	X			

- ❖ 배수공사시 스테인리스 배관, 스테인리스 덕트가 사용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협의 하에 '스테인리스 배관·덕트'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자율적으로 연동계약 체결 가능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스테인리스 배관	7%	X	스테인리스 배관·덕트	11%	O
스테인리스 덕트	4%	X			

- ▶ 단, 합산한 원재료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연동계약 체결 가능

권설 tip 산출내역서 상 시공방법이 기재된 경우

- ❖ 산출내역서 상 시공방법이 기재된 경우, ①시공방법 내 재료비를 재료별로 분할하여 주요 원재료를 판단하거나, ②시공방법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 1~2개를 주요 원재료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

(예시1) 총계약금액이 30억원인 습식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방법 내 재료비를 재료별로 분할하여 주요 원재료를 판단

내역	주요 재료비 단가 분할내역		재료비	
	레미탈	벽돌	단가	금액
시멘트벽돌쌓기	4,800	4,875	9,675	429,337,800
내벽미장	4,700		4,700	122,566,600

품목	재료비 품목액산출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수량	단가	금액		
레미탈			335,571,400	11%	O
시멘트벽돌쌓기	44376	4,800	213,004,800		
내벽미장	26078	4,700	122,566,600		
벽돌			216,333,000	7%	X
시멘트벽돌쌓기	44376	4,875	216,333,000		

- ▶ 산출내역서 상 '시멘트벽돌쌓기', '내벽미장'과 같은 형식으로 시공방법이 기재되어있고, 수급사업자가 시공방법 내 재료별로 재료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재료별(레미탈, 벽돌 등)로 재료비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판단

- ❖ 산출내역서 상 주요 원재료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 원·수급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대표적인 1~2개의 재료비 항목을 정해 기준지표, 반영비율, 연동산식 등을 설정하거나,
 - 시공방법 자체를 주요 원재료로 설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산출내역서 상 '시멘트벽돌쌓기', '내벽미장' 등 시공방법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방법 내 재료별로 재료비를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방법 자체를 주요 원재료로 정하되 시공방법 내 다양한 재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급사업자간 기준지표, 반영비율, 연동산식 등을 산정하는 데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2 설치성 공종의 경우

-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 tip 설치성 공종에서 주요 원재료 판단방법

- ❖ 설치성 공종에서 설치대상이 하도급대금에서 그 비용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원사업자가 무상사급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예시1)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총 설치공사대금(하도급대금, 부가세 포함)이 2억원이고 엘리베이터가 5천만원인 경우, 엘리베이터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예시2) 전선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상이한 규격별 전선 모두)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

3 가설재의 경우

- 가설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협의하에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 tip 가설재 사용시 주요 원재료 판단방법

- ❖ 가설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주요 원재료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설재에 대해 연동제 적용할 수 있음

(예시1) 가설교량설치공사 → 가설교량이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예시2) 본교량설치공사 중에 가설교량 설치하는 경우 → 본교량을 목적으로 보고 가설교량에 대해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예시3) 거푸집이 해당 공사 뿐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반복 사용되는 경우 → 거푸집은 법상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 가능

(예시4) 특이한 형태의 건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 → 거푸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 가능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유상사급 계약 등)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스틸데일리 포스코(유통가)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연동 대상 원재료	레미콘	이형철근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KOREA PDS 25mm 18Mpa*8cm	KOREA PDS 고장력 HD10mm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입찰일 등을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 tip 입찰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건설공사는 '입찰-계약-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입찰 시의 입찰 금액이나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찰일 등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구분	기재 사항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입찰일 - 비교시점: 계약 후 발주시

-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제도의 조정요건과의 통일성을 위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사이의 기간을 90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요건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을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변동률이 5%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2%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조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별로 정하거나 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6. 조정주기	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조정주기가 일정하다면 '매월 1일', '조정 월 말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7. 조정일	매월 1일, 조정 월 말일

- 발주시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전

8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원사업자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 사항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의 진행공정률이나 기성수량을 반영하여 연동산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ip **건설 tip** 조정일 이후 변경단가 적용 물량 판단방법

- ❖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일 이후에 이행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단가를 적용하거나 기성수량을 반영하여 연동산식을 구성할 수 있음

- 단, 이때 공사공정예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경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나, 이행의 지체사유가 원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변경단가를 적용함

(예시)

1. 하도급계약 기간은 '24.3.1~'24.12.31.로 설정되었으며 매달 예상공정률이 동일하게 설정된 경우라고 가정
2. 조정일('24.5.1)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예상공정률이 20%이므로 앞으로 남은 80%에 대해서 변경단가를 적용
3. 따라서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리(100단위)가 주요 원재료라고 보아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은 공정률에 따라 구리 80단위에 대해서 변경단가를 적용

구분	기재 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될 하도급대금 = 단가 × (전체수량 - 기성수량) × (1 + 변동률(직전 1개월 평균)) × 반영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m) = 직전 하도급단가 + {(레미콘 변동가격 × 레미콘 중량) + (이형철근 변동가격 × 이형철근 중량)} × 반영비율(100%)

- 다양한 규격의 원재료를 묶어서 하나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 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될 하도급단가 = 기준시점 단가 + 원자재 변동금액 × 동량 * 원자재 변동금액: 비교시점 구리금액-기준시점 구리금액 구리금액: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프리미엄 제외) 동량(kg/m): 입찰 시 제출된 규격별 동량

9.1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될 하도급대금 = 직전 1㎡당 재료단가 × {1 +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 - 1) × 반영비율} × 재료수량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하도급단가의 절사 기준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원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연동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10.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금연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PART

3

건설분야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 작성 예시

PART 3

건설분야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 작성 예시

※ 주의: 예시는 연동계약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로, 연동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당부분 가공한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 관계 등에 따라 이와 달리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1

- ◇ 동일한 재질의 원재료를 묶어 '주요 원재료'로 설정하는 경우
- ◇ 기준지표를 설정할 때 주요 원재료의 구성재질 중 대표적인 것을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00공장 라인 재배치 및 철거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스파이럴 덕트 및 부속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아연도금강판)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약정 체결일 또는 직전 대금변경 조정일의 전월 지수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지수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조정주기 해당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 = 직전 주요 원재료 단가 × {1 +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 - 1) × 주요 원재료 비율 × 반영비율}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0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2

◇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를 묶어 '주요 원재료'로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케이블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고시가(구리)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입찰 시 (건축서 기재가격) 비교시점: 계약 후 발주시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매월
7. 조정일	매월 10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text{조정될 하도급단가} = \text{기준시점 단가} + \text{원자재 변동금액} \times \text{동량}$ <p>* 원자재 변동금액: 비교시점 구리금액-기준시점 구리금액 구리금액: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프리미엄 제외) 동량(kg/m): 입찰 시 제출된 규격별 동량</p>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3

◇ 기성수량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을 구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계단난간대 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갈바룸 강판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물가정보 월 고시가격(갈바룸 강판)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계약체결일 비교시점: 월말
5. 조정요건	직전 1개월 평균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약정 체결일부터 1개월 주기
7. 조정일	조정 월 말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 월 말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단가 × (전체수량-기성수량) × (1 + 변동률(직전 1개월 평균)) × 반영률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4

- ◇ 재료비 이외에 가공비 등을 자율적으로 포함하여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 ◇ 계속적 거래관계시 발주시마다 조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시스템 가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재료비(LME 고시가(AL) + 비레트 가공비) + AL압출 가공비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5. 조정요건	변동률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AL중량 × (AL재료비 + AL압출 가공비)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5

- ◇ 기준지표를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판매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
- ◇ 기준시점·비교시점을 설정할 때 입찰일 등을 고려하는 경우
- ◇ 연동산식에 공정진행률을 고려한 잔여기성분을 반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철골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스틸데일리 포스코(유통가) SM355 월평균 가격 (후판)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입찰일(최초) 또는 직전 대금 조정일 비교시점: 금번 대금 조정일
5. 조정요건	±4%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20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20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압연강판 잔여기성 × (1 + 가격변동률) × 반영비율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작성예시 6

- ◇ 기준지표 산정시 환율을 고려하는 경우
- ◇ 입찰시 가격을 연동산식 등에 반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통신케이블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국내고시가 = (LME Cu 월평균가+PREMIUM) × TTS 월평균가 *PREMIUM=내수 프리미엄 기준, 환율: 하나은행 최초고시 기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대금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체결일) 비교시점: 1. 최초-약정체결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마지막날까지의 평균값 2. 중간- 분기별 평균값 3. 마지막- 직전 조정일 이후 납품 마지막 날까지의 평균값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매 분기
7. 조정일	매분기 익월 1일(4/1, 7/1, 10/1, 1/1)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입찰 시 자재비 + [(입찰시점 자재비 × 원자재비율 × 원자재비 증감율)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작성예시 7

- ◇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을 기준지표로 삼아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구매증빙을 원사업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원사업자는 이를 대금조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 ◇ 연동 산식 구성 시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주요 원재료 비중을 고려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발전기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발전기 엔진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 확인 가능한 증빙 포함)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 비교시점: 조정일 전월의 말일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반기
7. 조정일	조정요건 충족시 익월 25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직전 하도급대금 + 발전기 계약단가(직전 계약기준) × 발전기 엔진의 원재료 비율 × 엔진의 가격상승률 × 반영비율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1. 원자재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내역서 및 원재료 구매증빙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해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금연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3. 기준지표가 유사 사양의 평균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방에 불합리한 조정이 될 경우 기준지표를 협의하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작성예시 8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를 기준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방수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복합방수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비금속광물제품지수)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대금변경 조정일의 전월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3개월
7. 조정일	조정주기 해당월의 마지막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직전 1㎡당 재료단가 × {1 +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 - 1) × 반영비율} × 재료수량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재료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9

- ◇ 설치성 공종에서 설치물을 주요 원재료로 보는 경우
- ◇ 기준지표 설정시 복수의 기관에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 ◇ 다양한 규격의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보는 경우, 기준지표 설정시에는 대표적인 규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 ◇ 정산 시 하도급대금을 일괄적용하도록 조정대금 반영일을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전선설치) 통신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전선류(CABLE&WIRE)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물가정보지3개 평균값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원) *CABLE은 F-CV CABLE 1C 70SQ, WIRE는 HFIX 1C 1.5SQ를 기준으로 전체 규격에 적용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 이전 6개월(평균) 만약 조정이 없었다면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이전 6개월(평균) 최초 조정일이 3월 또는 9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만큼의 평균 적용
5. 조정요건	±10%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매년 3, 9월
7. 조정일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정산 시 일괄적용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계약단가 × {(비교시점 단가 - 기준시점 단가) ÷ 기준시점 단가} × 반영비율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재료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10

◇ 중간재를 주요 원재료로 삼을 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중간재의 대표 재질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중전열관온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포틀랜드 시멘트)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약정 체결일/직전 대금변경 조정일의 전월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5. 조정요건	기준가격 변동률 ±3%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3개월
7. 조정일	조정주기 해당월의 마지막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이후 5일 이내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대금 = 직전 1EA당 재료단가 × {1 +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 - 1) × 반영비율} × 재료수량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재료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작성예시 11

◇ 주요 원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조립식 PC BOX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레미콘	이형철근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KOREA PDS 25mm 18Mpa*8cm	KOREA PDS 고장력 HD10mm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계약월 10일 고시가 비교시점: 조정월의 매월 10일 고시가	
5. 조정요건	±10% 이상 변동시 (레미콘, 철근 중 변동폭 한 개 이상 발생 시 적용)	
6. 조정주기	분기별	
7. 조정일	매월 25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최종물량 납품 후 분기정산자료 반영하여 최종 정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m) = 직전 하도급단가 + [(레미콘 변동가격 × 레미콘 중량) + (이형철근 변동가격 × 이형철근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재료단가는 1원 미만 절사 제품 사양별 중량에 따름	

작성예시 12

◇ 가공물 또는 중간재 중 동일한 천연재료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원재료로 묶어 '주요 원재료'로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기계설비공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배관용 강관(흑관, 백관) 및 강관 이음쇠 등 부속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물가협회 물가지 지수(강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약정 체결일 또는 직전 대금변경 조정일의 전월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지수
5. 조정요건	±3% 이상 변동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조정주기 해당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하도급단가 = 직전 주요 원재료 단가 × {1 + (비교시점 기준가격 ÷ 기준시점 기준가격) - 1} × 주요 원재료 비율 × 반영비율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 사항	하도급단가는 10원 미만 절사



PART

4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방법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2. 협의 개요
3. 미연동 사유

PART 4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2 협의 개요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원·수급사업자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건설 tip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 특히 건설위탁 시 입찰 등을 진행할 때,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입찰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로 볼 수 있음
 - 입찰 단계에서 응찰자의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볼 수 있음
- ❖ 원사업자가 계약 필요 서류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여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볼 수 있음

3 미연동 사유

-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을 위한 원가정보를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미연동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가정보 공개 없이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미공개를 원하는 경우

- 연동계약 체결 전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의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는데 해당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한국물가협회 등)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원재료 확인서는 원·수급사업자간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협의 자료이며 객관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되었으므로 원·수급사업자간 이를 신뢰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원재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미연동 합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기타 대금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연동 합의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약(법 제16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PART

5

기타 법률과의 비교

1.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 1. 하도급법 제16조: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련
3. 기타 법률상 의무 등

PART
5

기타 법률과의 비교

1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연동제의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노무비, 경비(전기료 등)에 대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시점	사전(계약체결 시)	사후(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다만,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1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어느 경우에 해당하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뿐 아니라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자연재해, 정부 정책의 변경 등)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함
- ③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조정 절차

-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합니다.

〈조정 협의 시 고려사항〉

- ① 공급원가 및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②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 ③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 ④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 ⑤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3 조정 협의의 종료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 관련 서면을 보존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이 결렬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 ①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③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⑤ 협이가 지연되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의 조정 협의의 대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 *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함
-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됨
- ▣ **조정 대행협상 신청 절차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므로 연동제 사각지대 보완 기대
 - 공급원가 변동폭과 상관 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대행협상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과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등 관련 신청 서류를 삭제하여 조정 대행협상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음

2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수급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원사업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는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①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②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았으며, 동일한 사유로 수급 사업자가 실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위 홈페이지-보도자료).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2.1 하도급법 제16조: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이 조정금액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금액이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동제 조정요건 등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동제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주요 원재료에 대한 조정이 동시 발생 >

- ① (발주자-원사업자) 국가계약법상 총액 ES제도 중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원사업자가 총액 ES제도 중 품목조정률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았고 이에 따라 수급 사업자도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급법 제16조) 받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해당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조정받는데, 해당금액이 연동 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당사자간 협의 따라 연동산식·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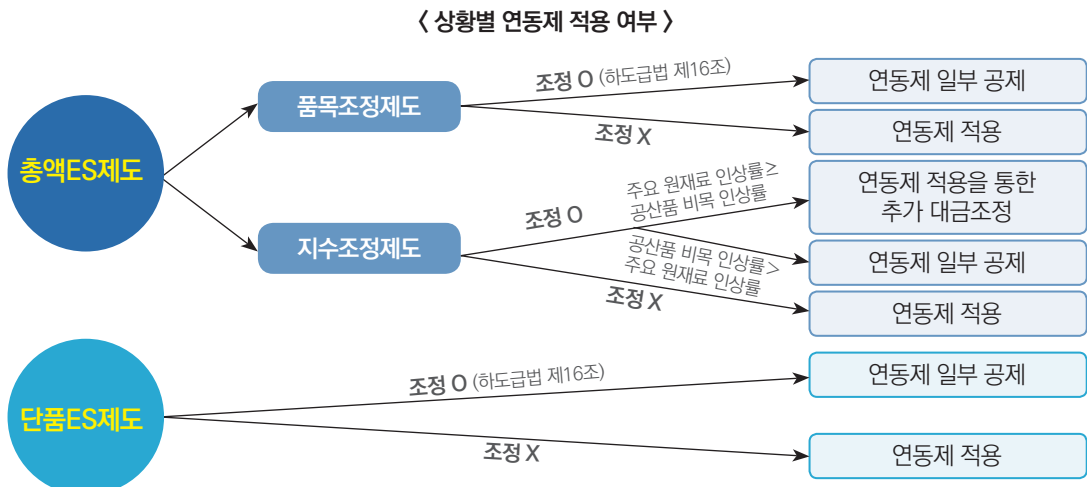
* (예)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공통된 요인으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제도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받는 동시에(하도급법 제16조) 연동제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대금증액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조정 시점을 새로운 기준시점(예: 직전조정일)으로 볼 수 있음

② (발주자-원사업자) 국가계약법상 **총액 ES제도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1)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공산품 비목의 인상률 < 주요 원재료의 인상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공산품 비목의 인상률만큼 대금을 조정하여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공산품 비목의 인상률 > 주요 원재료의 인상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공산품 비목의 인상률만큼 대금을 조정하여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급법 제16조)받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해당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조정받는데, 해당금액이 연동 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동산식·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발주자-원사업자) 국가계약법상 **단품 ES제도**가 적용되어 주요 원재료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단품 ES제도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급법 제16조)받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해당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조정받는데, 해당금액이 연동 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동산식·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법 제16조의 대금조정은 연동 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권설업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방법
 권설업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예시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기타 법률과의 비교

3 기타 법률상 의무 등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와 **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은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연동제 관련 사항은 유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생협력법을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tip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의무

-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함(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으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하도급대금이 4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건설업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